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

오산대학교

오산대학교(이하 "대학교"라 한다)와 _____(회 사 명)_____ (이하 "산업체"라 한다)은(는)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위탁교육의 과정과 모집단위별 인원)

①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과정으로 한다.

②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연도	학과(계열)명	위탁생 수	성명	위탁교육장
2027		명		본교

제3조 (위탁생의 자격) 고등학교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산업체 재직 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산업체에서 추천한다.

② 본 대학교는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 또는 대학교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 (교육과정의 편성)

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 (산업체의 시설사용) 산업체의 시설사용에 합의가 있을 경우 산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7조 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)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원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8조 (교육비 및 등록)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교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 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0조 (위탁생 제적처리 기준)

① 입학직전 협약 산업체를 퇴직한 경우

② 산업체 퇴직 시 제적처리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학업유지 가능

-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고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

※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공적증명서증빙기준

③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을 하지 않은 경우

④ 매학기 시작 전월 위탁교육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재직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⑤ 4대 보험 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산업체 근무 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(2학기에 확인)

제11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산업체가 대학교에 대해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.

제12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 필요한 경우 산업체와 협의하여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3조 (준용)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,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20 년 월 일

대 학

주 소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5

기관명 오산대학교

대 표 총장 **황 홍 규** (직인)

산업체

주 소

기관명

대 표 (직인)